1874년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민선의원설립 시기상조론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김도형*

〈차 례〉

1. 머리말
2. 민선의원설립건백서와 가토의 시기상조론
3. 건백자들의 시기상조론 반박
4. 오이 겐타로와의 논쟁
5. 시기상조론의 내재적 이해
6. 맺음말

【국문초록】

1874(明治 7)년, 정한논쟁에서 패퇴한 구 참의들로부터 '민선의원설립건백서'가 제출되면서 당시 일본에서는 민선의원설립논쟁이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올랐다. 이전까지 선구적으로 입헌제 및 상하공치(上下共治)의 중요성을 설파하던 가토 히로유키는, 이에 대해 소위 '시기상조론'이라고 불리는 입장을 신문지상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전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이런 가토의 입장표명을 '변절'내지 '전향' 등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유를 정치적 상황이나 개인의 관료적 성향, 혹은 그

* 영남대학교 BK21+글로컬동아시아문화콘텐츠사업단 연구교수

'우민관(愚民觀)'으로부터 찾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후적 관점으로부터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본 연구는 가토의 이전 저술들로부터의 연속성 안에서 이 '시기상조론'의 내재적 논리를 구명하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 고려 내지 '우민관'같은 관점만이 아닌, 가토가 당시 지니고 있던 현실인식과 문제의식, 특히 이전부터 이어지던 군주관(천황관)으로부터 군주(천황)의 계몽을 우선시하시는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가토 히로유키, 민선의원설립논쟁, 시기상조론, 우민관, 전향, 진정대의, 국체신론, 계몽주의

1. 머리말

1874년 1월,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에토 신페이(江藤新平), 유리 기미마사(由利公正), 후루사와 우로(古澤迂郎), 오카모토 겐자부로(岡本健三郎), 고무로 노부오(小室信夫) 등, 이전 정한논쟁에서 패퇴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구 관료들이 左院에 「민찬의원설립건백서(民撰議院設立建白書)」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의제로서의 소위 '민선의원논쟁'이 시작되었다. 사실 민선의원논쟁이 그렇게까지 파격적인 의제는 아니었던 것이, 1873(明治 6)년 정변에서 정부에 잔류한 오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나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도 의회의 도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1]

1) 이와 관련해서는 방광석, 「제1장 메이지 초기의 국가체제구상과 이토 히로부미」, 『근대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혜안, 2008, pp. 23-73을 참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의 도입은 시간의 문제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다만 정한논쟁으로 인해 정부에서 물러나게 된 이타가키 등이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재기를 도모해 보기 위해 '민선의원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의제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 속에서 당대의 대표적인 양학지식인 중 한 사람이자 의회론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소개자이기도 했던 가토 히로유키가 '시기상조론'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화제를 낳게 되었다. 이른 시기부터 의회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전력이 있던 인물인 만큼, 가토의 이 '상조론'은 일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어쩌면 자신의 저술과 주장들에 영향을 받았던 민권론자들로부터 그로 인해 더욱 격렬한 항의와 비난을 듣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2)]

그러나 이 시기 가토의 태도를 '전향'적이거나 '변절'적인 것으로 간단히 치부해 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가토 자신이 훗날 자전 등에서 당시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듯이,[3)] 단지 정부의 의뢰나 강요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가 굳이 그랬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훗날 가토의 소위 '전향'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든 천부인권논쟁과 『인권신설(人權新說)』의 출판에는 외부의 압력이 가해진 전후의 정황을 엿볼 수 있지만, 그것은 이 민선의원논쟁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다

---

2) 이 시기를 전후한 가토의 행보에 대해서 '전향'이라고 평가하거나 또는 '전향'의 예비적 단계로 간주하는 연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大久保利謙, 「加藤弘之」, 『大久保利謙歷史著作集』第8卷, 吉川弘文館, 1989, pp. 387-404., 松本三之介, 「加藤弘之の轉向」, 『近代日本の政治と人間』, 創文社, 1966, pp. 61-92., 渡辺和靖, 「加藤弘之の所謂「轉向」－その思想史的位置付け」『日本思想史研究』第5号, 1971, pp. 18-31., 戸田文明, 「加藤弘之の轉向」, 『四天王寺國際仏教大學紀要』第44号, 2007, pp. 15-28 등을 참조.

3) 加藤弘之, 「經歷談」, 植手通有遍 『日本の名著34 西周・加藤弘之』, 中央公論社, 1972, p. 486.

르다. 무엇보다 '변절' 내지 '전향'이라는 규정을 위해서는 가토가 이 논쟁을 전후하여 자신의 모순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원래 주장을 반박하거나 뒤집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 주장이 정말 모순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관성을 가진 것인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그 의도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위와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른바 '민선의원설립시기상조논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전후한 가토의 사상적 궤적 안에서 그의 이전 주장과 상조론의 주장이 과연 정말로 모순된 것이었는지, 만일 일관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모순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단지 민선의원논쟁에 관련한 가토의 사상적 일관성을 밝히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가토 사상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것이다.

2. 민선의원설립건백서와 가토의 시기상조론

잠시 이 논쟁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가 좌원에 이 「건백서」를 제출했던 것이 1874년 1월 17일의 일이었다. 그것이 다음날인 18일의 『닛신신지시(日新眞事誌)』(206호)에서 공표되자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는데, 사실 정부의 전 관료들이 연서하여 공개적으로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던 데다가, 그 내용상으로도 신랄한 비판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닛신신지시』(218호, 일자는 1월 26일자임)에 공개적으로 이들의 「건백서」를 반박하는 「민선의원 설립에 대한 의문(民撰議院ヲ設立スルノ疑問)」이라는 제목으로 가토의 반박문이 실렸고, 다시 2월 20일에 이타가

키의 재반박문(『日新眞事誌』第232号, 明治七年二月二十日)이 실리면서 논쟁이 펼쳐졌던 것이다.

먼저 「건백서」는 당시 일본의 상황을, 정권이 오로지 유사(有司)들에게 돌아가고, 언로(言路)는 봉쇄되어 괴로움을 토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 타개책으로서 "이를 진구(振救)할 방도를 강구해 보면, 오직 천하의 공의(公議)를 펼치는 데에 있고, 천하의 공의를 펼치는 일은 민선의원을 세우는 것 뿐"[4]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서 민선의원을 설립할 근거로서는 "무릇 인민정부에 대해서 조세를 내는 의무가 있는 자는, 정부의 일에 참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는 "천하의 통론(通論)"[5]을 들고, "우리나라의 인민이 불학무지(不學無智)하여 아직 개명의 영역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니…… 지금 갑작스레 의원을 세우는 일은 곧 천하의 어리석은 이들을 모으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음은 알고 있지만, 도리어 "인민으로 하여금 빠르게 배우고 익혀서 개명의 영역으로 나아가게"[6] 하는 데에는 민선의원을 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진보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직분이라고 하여, 민선의원을 설치하는 일이야말로 오늘날의 급무라고 하고,[7] 또한 정부가 강해지려면 천하의 인민이 모두 한마음이어야 하는데, "민선의원을 세우면 곧 정부와 인민 사이에 정실을 융통하게 하여 서로 함께 일체를 이루게 되어 나라가 비로소 강해질 수 있고, 정부가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것"[8]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해서 건백서는 "이 의원을 세우는 것은 천하의 진리를 신장하고, 인민의 공론통의를 세워

4) 「民撰議院設立建白書」, 山室信一・中野目徹校注 『明六雜誌』(上), 岩波書店, 1999, pp. 131-132.
5) 上揭書, p. 132.
6) 上揭書, p. 133.
7) 上揭書, p. 133.
8) 上揭書, p. 134.

서 천하의 원기를 고무하며, 이로부터 상하가 친근하고 군신이 서로 사랑하여 우리 제국을 유지진기(維持振起)하고 행복안전을 보호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글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건백서의 내용은 이제까지 가토가 자신의 처녀작 『도나리구사(隣草)』(1861) 이래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입헌정체채용론이나 공회설립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의회를 설치하면 천하의 인민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정부가 강해진다'는 논리는, 바로 '나라가 강해지려면 인화(人和)야말로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가토가 이전 『도나리구사』에서 펼쳤던 주장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토는 이 '민선의원설립론에 반박을 가하였던 것인데, 이하 가토의 「설립에 대한 의문」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가토는 "'국가가 치안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데에는 공의를 펼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그로 인해 "(국가를) 진기할 방도를 강구하려면 오직 천하의 공의를 펼치는 데에 있다"는 것은 일단 타당하다고 말한다.[9] 그러나 '공의를 펼치는 일'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 "무엇이 어려운가 하면, 공의가 반드시 지론명설(至論明說)하지는 않다는 점"[10]이 바로 그것이다. 서구문명개화의 나라들에서조차 그러한데, 하물며 일본처럼 개화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어떻겠냐는 것이다. 민선의원은 서구의 개화한 나라들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본과 같은 개화가 미진한 나라에서는 "모든 인민의 지식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크게 자유의 권리를 얻게 된다면, 이를 시행할 올바른 방도를 몰라서 도리어 이로 인하여 자포자기에 빠지고, 마

9) 加藤弘之, 「民撰議院ヲ設立スルノ疑問」, 『日新眞事誌』第218号(明治7年 1月 26日) 본 사료를 비롯한 이하 이타가키 등의 「加藤弘之ニ答フル書」와 오이 겐타로의 「加藤弘之ヘノ質問」은 鳥海靖 『日本近代史講義』, 東京大學出版會, 1988.의 「付祿 參考史料」 수록본을 이용했다. p. 296.

10) 上揭書, p. 296.

침내 국가의 치안을 상해할 우려가 있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1]라며 유해무익하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논의로부터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가토가 일찍이 자신의 저서 『진정대의(眞政大意)』(1870)에서 주장한 '시처론(時處論)'일 것이다. 가토는 『진정대의』에서 유럽의 의회제도와 헌법이 대단히 훌륭한 제도로 기능하는 사례로 영국을 소개하며, 다만 "영국과 같이 시세와 인정에 잘 맞는 헌법을 세운 나라가 대단히 적"고, "이 시(時)·처(處)의 두 가지를 모르고 다만 서생론으로 정체헌법만을 그럴듯하게 세운다"면 도리어 반드시 해가 될 것이며, "완우한 의론만으로 도리어 치안의 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잠시 전치(專治) 등의 정체를 이용하고 자연스레 신민의 권리도 제한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여 인민의 개화정도에 따라서는 본인이 주장한 신민의 권리마저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12]을 표명했던 바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가토가 일본 인민의 개화정도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린 것인데, 이에 대해 「설립에 대한 의문」에서는 반정부운동의 고양을 두려워하고 인민을 불신하는 관료적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가토는 영국의 의회제도만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뿐, 영국 이외의 나라들에서는 의회제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13] 즉 이것은 모두 인민의 개화 여부에 달린 것으로, 가토가 보기에 유럽에서조차 이리 요원한 원활한 의회기능의 작용이, 하물며 당시의 일본에서 가능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건백서의 또 하나의 논점인 민선의원의 설립이야말로 인민을 '개명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땅히 받듦으로써 목적으로 해야 하는 직분은, 인민

11) 上揭書, p. 296.
12) 加藤弘之, 『眞政大意』, 植手通有遍, 前揭書, 1972, p. 362.
13) 上揭書, p. 362.

으로 하여금 진보하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옳은 이야기지만, 그 목적은 민선의원의 설립에 의해서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일으키고 인재를 교육하는 점진에 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4] 가토는 "개화가 얕은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치의 정체를 이용하고, 또 신민의 권리도 제한"[15]해야 하는데, 가토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지금 일본의 현실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다.

이렇게 가토는 의회의 설립이 우선 '국민의 개화문명'을 전제로 할 것, 둘째로 '국민의 개화문명'은 국가에 의한 학교의 설립, 인재의 육성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하여, 도리어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현존 메이지정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전제계몽주의야말로 일본의 근대화를 진전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이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곳으로 "프러시아는 오늘날 …… 유럽 안의 웅강국(雄强國)을 이루"어 "특히 프리드리히 제2세 이래로 정부가 마음을 오로지 인재의 교육에 힘쓴 데에 있다"[16]고 하여 프리드리히 2세 치하의 프러시아를 지목하고 있다. 이 역시 이전 『진정대의』에서 이미 밝혔던 바이다.

> 프리드리히 대왕이라는 자는, 자못 현군인데다가 왕공에는 드문 학자로, 정학에 대해서 저서도 많고, 특히 힘을 다하여 군주의 전권을 痛斥할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그 정도의 인물조차도 완전히 전치의 정체를 폐하여 입헌정체로 고치는 일은 하지 않고, 또 크게 신민에게 불기의 권리를 주었다고 할 정도의 일도 없이 다만 점차적으로 서서히 마땅한 방향으로 하도록 조금씩 개혁을 해 갔다고 하는 것은 즉 마땅한 때와 장소를 알았기 때문으로, …… 다만 점차 인민의 지식이 열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정체헌법을 바꾸어 가고자 그와 같은 방법을 썼을 뿐이다.[17]

---

14) 「民撰議院ヲ設立 スルノ疑問」, 鳥海靖, 前揭書, 1988, p. 296.
15) 加藤弘之, 『眞政大意』, 植手通有遍, 前揭書, 1972, p. 363.
16) 「民撰議院ヲ設立 スルノ疑問」, 鳥海靖, 前揭書, 1988, p. 296.
17) 加藤弘之, 『眞政大意』, 植手通有遍, 前揭書, 1972, p. 363.

결국 가토가 이와 같은 점진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일본 인민의 현실을 "가령 정부가 무엇인지, 정부세수의 권리가 어떤 이치에서 나오는지, 신민군역의 의무가 어떤 이치에서 나오는지 등, 대개 천근평이(淺近平易)한 것들이라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십중팔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비더만(Karl Biedermann, 1812-1901)의 의회론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각국의 시세민정 등에 합당하고 적절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국의 政令이 서로 함께 향하는 중심이 있다.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나, 이 제도를 창정(創定)하려면 반드시 먼저 시세민정을 상세히 살펴서, 이를 창정하기에 지당한 때와 정도를 측정하는 일이 대단히 긴요하며, 이 일은 오직 현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제도를 세우는 것이 너무 빠르면 도리어 해가 되고, 너무 늦으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18] 등과 같은 것으로 가토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결국 가토의 주장은 "인민의 개화가 아직 미진하니 서둘러 의회를 열기보다는, 정부가 인민의 개화를 이끄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는 잠시 특재(特裁)의 정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지만, 원래 인민을 위해서 정부가 있지, 정부를 위해서 인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잊지 않고, 오직 프리드리히의 공심(公心)으로 스스로 정권을 제한하고, 힘껏 인민의 사권(私權)을 신장시키며 언로를 통개하고, 교육을 권려하여 이로써 우리나라로 하여금 빠르게 개명국이 되게 하"[19]는 데에 힘써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글을 맺고 있다.

이상 가토의 논의는 『진정대의』에서 밝힌 정치적 견해를 기본적으로는 유지하면서도, 그 강조점을 '인민의 개화미전(開化未全)'에

18) 「民撰議院ヲ設立 スルノ疑問」, 鳥海靖, 前揭書, 1988, pp. 297-298.
19) 上揭書, p. 299.

둠으로써 자신이 밝혔던 정치적 이상을 현실에서 운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찌기 『진정대의』에서 펼쳤던, 정부의 권도(勸導)가 최대한 민간의 자유에 맡겨져야 하며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정부가 간섭해야 한다는 대단히 소극적인 권도론[20]이 여기에서는 '정부의 특재'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가토가 『진정대의』를 간행하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밝힌 이와 같은 「상조론」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이전 견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작 현실 정치에 적용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었다. 인민의 개화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하지만, 가토가 이미 1860년대부터 입헌정체나 상하공치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태도의 변화에는 어딘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것은 물론 가토의 지난 행적, 즉 관료로서의 출세, 독일학의 본격적 수용, 무엇보다도 천황을 서구식의 입헌군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가토의 목표 등 다양한 현실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으나, 또한 가토의 논리적 전개의 필연성을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흔히 지적되기로는 가토가 지녔던 인민이 '개화미전'하다는 인식, 즉 '우민관(愚民觀)이 가토로 하여금 현실정치상의 보수적 태도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지적되곤 하는데, 과연 이런 평가는 타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 이후 벌어지는 논쟁과 반박 안에서 좀 더 면밀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건백자들의 시기상조론 반박

가토의 시기상조론이 공개되자마자 그 당사자인 건백자들은 물 론, 다수의 지식인, 언론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일어났다. 건백자인 소

20) 加藤弘之, 『眞正大意』, 植手通有遍, 前揭書, 1972, p. 365.

에지마, 고토, 이타가키의 「가토 히로유키에게 답하는 서」, 오카모토, 고무로, 후루사와의 「민선의원변(民選議員辨)」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21] 또한 건백자와 가토 간의 직접적인 논쟁 이외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郎, 당시 필명 馬城台二郎)에 의한 가토 비판[22]은 '바시로(馬城)씨의 논의에 그친다고 할 만하다'고 일컬어질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다. 일단 여기에서는 가토의 직접적 반박대상이었던 건백자들의 재반박과 오이와의 논쟁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도록 하자.

먼저 이타가키 등은 「가토 히로유키에게 답하는 서(加藤弘之ニ答フル書)」(板垣退助ほか 『日新眞事誌』第232号, 明治七年二月二十日)라는 제목으로 가토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가토가 지적한 "대개 정부의 체재를 논하는 것이 우선 마땅히 그 나라 진보의 정도와 그 형세 여하를 상세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을 마땅히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부득이한 정형(情形)에서 나온 것"[23]이라며 반박한다. 가토가 반박의 근거로 든 '독일인의 말', 즉 비더만의 논의는 유럽의 이야기지만, 당시 일본의 상황은 이타가키 등이 보기에는 민선의원이 설립될 만한 상태라는 것이다. 가령 「설립에 대한 의문」에서 가토는 프리드리히 2세의 사례를 들어서 당분간 전제군주제가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타가키 등이 보기에 프리드리히 2세의 경우는 일본에 적합한 사례가 아니다. 이타가키 등은 "만일 정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함부로 그와 같은 인물이 나오리라 예상하면서 역사적 사건에 맞추고자 한다면, 그야말로 대

21) 이 논쟁은 이후 『民選議員集說』로 간행되었다.(『明治文化全集』 第4卷 憲政篇에 수록) 여기에는 32편의 찬부양론이 실려 있는데, 그 약 반수가 찬성론으로, 가토의 소론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22) 馬城臺二郎, 「加藤弘之ヘノ質問」, 『日新眞事誌』第234号(明治7年 2月 23日)

23) 板垣退助ほか, 「加藤弘之ニ答フル書」, 前揭 『明治文化全集』 第4卷 憲政 篇, p. 299.

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24]라며 비판하는데, 사실 이 말은 가토가 『도나리구사』에서 인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정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던 주장[25]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현명한 계몽군주인 프리드리히 2세의 사례를 든다고 해서, 반드시 현재 메이지 천황이 프리드리히 2세와 같은 현명한 계몽군주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이타가키 등은 "우리 천황폐하가 영명신무(英明神武)하시어 언젠가 반드시 프리드리히 제2세만이 홀로 그 선미함을 유럽에서 떨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폐하의 연세가 아직 어리다. 즉 오늘날 사무의 급박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유지진기(維持振起)하는 길은 역시 오직 민선의원을 세우는 데에 있을 뿐"[26]이라고 하여, 아직 어린 나이의 천황을 보좌하는 제도로서의 민선의원을 강조한다.

또한 가토가 아직 인민의 개화정도가 완전하지 않아서 자신의 의사를 대신할 대리자를 선택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민선의원개설론은 어디까지나 '역시 갑작스레 인민이 그 명대인(名代人)을 고를 권리를 일반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족 및 호족의 농상 등으로 하여금 오직 잠시 이 권리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여, 사실상 유신으로 인해 그 입지가 흔들린 사족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스스로 천명한다. 즉 인민의 개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유신의 공신들을 나오게 한" "사족 및 농상"[27]의 상류자들을 보다 널리 정치에 참여케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의원을 개설한다고 해서 "의

24) 上揭書, p. 300.
25) 이와 관련해서는 김도형「근대초기 일본 양학(洋學)수용의 유교적 맥락 - 가토 히로유키의 도나리구사를 중심으로」, 한국일본학회, 『日本學報』 제99호, 2014. 5, pp. 363-380을 참조.
26) 板垣退助ほか,「加藤弘之ニ答フル書」, 前揭『明治文化全集』第4卷 憲政篇, p. 300.
27) 上揭書, p. 300.

원을 세우는 것이 우론을 모으게 될까 두려워 하"[28]는 가토의 우려를 "아마도 생각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29]이라며 반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토가 현재의 상황은 민선의원을 개설하기 보다는 인민의 개화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타가키 등은 밀(John Sturat Mill)의 이른바 "인간뇌력상의 교육"[30]에 대한 논의를 끌어들여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 사람이 일생에서 그 사상 및 감각을 크게 기를 기회를 만나는 일이 매우 적다. 사람은 매일 대개 비슷한 일을 반복하여, 급한 일상에 따라 거기에 익숙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 설령 유익한 책이 있어도 그 사람이 이를 읽을 뜻을 일으킬 방법이 없다. 또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교육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마땅히 인민으로 하여금 공공의 사무를 다루게 하고, 이로써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민교육의 일을 주장하는 것은 누누이 말하지만, 오직 서적과 議論을 통해서 교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은 가령 곧 산술의 문제와 같은 것이지 空理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은 다만 능히 사업으로 인하여 배울 수 있을 뿐이다.[31]

인간에게 아무리 교육을 강조한다고 한들, 스스로 익히고 배울 마음이 없으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 도리어 자신의 사업과 사무 안에서 그 필요를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교육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니, "자유정부의 공덕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지각과 감각의 교육으로, 만일 인민이 그 나라의 사무에 간여할 수 있다면 곧 이 양자를 교육하여 끝까지 마친다고 해도 이에 미치지

---

28) 上揭書, p. 302.
29) 上揭書, p. 302.
30) 上揭書, p. 302.
31) 上揭書, pp. 302-303.

못할 것"[32]이라고 하여, 교육을 통한 개화를 주장하는 가토의 견해에 대해 실제 공무에 관여하게 하는 편이 인민의 개화에 더 도움이 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타가키 등의 건백자들 역시 가토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인민이 '무지불학'하다는 현상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가토가 '교육'에 의한 개화를 급선무라고 주장한 데 비해, 이타가키 등은 인민으로 하여금 공무에 관여하게 하는 일이 도리어 개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가토의 입장이 이전과 다른 점은, 『진정대의』까지의 가토는 인민에 대한 정부의 '권도'가 적어도 "안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이외에는 결코 불기자립의 정과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33] 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정부의 개입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던데 반해, 민선의원 논쟁에 이르러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권도를 통한 '교육'을 강조하는 데에 있었다.

4. 오이 겐타로와의 논쟁

이와 같은 태도는 이 민선의원논쟁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논쟁, 즉 오이 겐타로와의 논쟁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오이의 가토에 대한 반박은 「가토 히로유키에게 질문함(加藤弘之ヘノ質問)」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상기 논쟁이 펼쳐진 『닛신신지시』제234호(明治7년 2월 23일자)에 실렸다.

이 논쟁에서 오이는 가토의 시기상조론에 대해서 위의 이타가키 등의 논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반박하는데, 이 논쟁 역시, 사실은 가토가 이전 『도나리구사』이래로 주장했던 논리들을

32) 上揭書, p. 302.
33) 加藤弘之, 『眞正大意』, 植手通有編, 前揭書, 1972, p. 367.

그대로 되돌려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오이가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민선의원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그 정령을 신뢰하고 복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며,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유사전제가 이어지게 된다면 자칫 "정령을 믿지 않게 되어 인민이 이를 믿고 따르지 않게 되"[34]면서 국가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토가 초기에 주장했던 '인화'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 또한 가토가 프리드리히 2세의 사례로부터 시기상조론을 펼치는 데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서구각국에서 독재제도가 행해지고, 민선의원 따위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사민(士民)은 지금 각국의 사정과 정체를 견문하여 흑백과 빙탄의 구별을 한다. 국민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그 지식도 프리드리히 2세의 시대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35]고 하여 작금 일본 인민의 개화정도가 프리드리히 시기의 프러시아보다 뛰어나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나아가 가토의 "지론명설을 미개한 인민에게 바랄 수 없다. 어리석은 논의들로 채용할 만한 것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헌법을 제정하"면서 "관리 두, 세 사람의 결정"에 의거하지 않고, "어리석더라도 역시 마땅히 이에 참여하여 말하게 하고 그런 연후에 정부가 이를 판단하여 확정"하면 인민도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도헌법을 신봉할 것이고, 관리들도 "세태인정에 통효하여 국가는 안정될 것"[36]이다.

가토가 의원의 설립보다도 인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물론 "마땅히 인재교육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는 해도, 동시에 "의원을 열어 인민이 국사에 관여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34) 馬城臺二郎「加藤弘之ヘノ質問」, 前揭『明治文化全集』第4卷 憲政篇, pp. 303-304.

35) 上揭書, p. 304.

36) 上揭書, p. 304.

하며, 나아가서는 가토가 말한바 자주의 마음과 감위(敢爲)의 기운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행여나 "미개한 인민으로 하여금 감위의 기운을 촉구하여 일으키는 일은, 흡사 젖먹이에게 도검을 맡기는 것과 같"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이미 우리의 예속된 인민에게 인민자주의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국가에 대한 의무 역시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면, 이로써 감위의 기운을 도발한들 민이 어찌 무도하게 정부를 압박하겠는가." 도리어, 민선의원의 개설은 "인민은 그 취지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몰라 관령이 그릇되지는 않은가 의심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 폭동과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도구일 것"이라며 날카롭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37]

이와 같은 오이의 가토에 대한 반박은 의회를 위아래 사이의 소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또한 『도나리구사』에서 나온 가토의 주장으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가토는 다시 「가토 히로유키 답서(加藤弘之答書)」[38]라는 반박문을 게재한다. 거기에서 가토는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1. "유사전제의 폐단이 원래 두려워할 만"하지만, 만일 그로 인해 의원의 필요를 주장하는 것이라 한다면 "유사전제가 더욱 심한 …… 야만국"에도 의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야만국 및 미개의 나라에서는 "현량방정(賢良方正)한 유사를 이용"함으로써 의원을 대체하면 그만이다.

2. "프러시아 프리드리히 시대에는 특재의 정치가 각국에서 행하여졌지만, 인민이 결코 이에 안주하였던 것이 아니다. 각국 인민은 정부의 폭권에 항거하여 민권을 신장시키려 도모"하였지만, "프리드리히는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특재의 정치를 행하고 ……

37) 上揭書, p. 305.

38) 加藤弘之, 「加藤弘之答書」, 前揭 『明治文化全集』 第4卷 憲政篇, p. 389. 수록.

인민으로 하여금 진보시키는 데에 힘썼던 것"이다.

3. 의원을 세워서 "우론이라도 이를 듣고 정부가 이를 재단(裁斷)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일단 의원을 열어 의회의 제도를 세운 후"에 의원이 결정한 '우론'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인민이 더욱 정부의 전제를 근심하게 될 것"이다.

4. 민권이 왕성한 나라에서는 '인지가 개명'하였으므로 인민이 자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연유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개화가 완전하지 않은 인민은 이러한 이치를 아는 자가 적기 때문에 결국 그 권리를 함부로 행할 우려가 있다."

5. "인민이 자주의 마음과 감위한 기운"을 진기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크게 마땅하다. 그러나 "인민자주의 권리는 사권이다. 국사에 관여할 권리는 공권으로,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

6. "상지하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폭동이 있다는 것은 실로 확론"이지만 상지하달을 위해서는 "오직 현재(賢宰)를 선출하여 지방관에 두고, 힘써 인민에게 설유(說諭)"하면 될 것이다.[39]

이렇게 말한 후에 가토는 2, 3년 전까지는 민선의원의 설립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던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후 다시 서양의 서적을 읽고 실제에 비추어 숙고하여, 마침내 민선의원이 시기상조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민선의원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시세여하에 따르는 것일 뿐"[40]이라고 하여 자기입장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유사전제가 반드시 부정해야만 할 것은 아니라는 예로서 메이지 유신이나 폐번치현은 '유지(有志)'에 의해서 단행된 것이라고 덧붙인다. "부언하여 시험 삼아 묻고자 한다. 그대는 태정일신(太政一

39) 上揭書, pp. 388-389. 戸田文明, 「加藤弘之の轉向」『四天王寺國際仏教大學紀要』第44号, 2007, pp. 20-22에서 재인용.

40) 上揭書, p. 389.

新)과 폐봉입현(廢封立縣)을 진정 천하의 여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 이 양대 개혁은 여러 개의 웅번과 수백의 유지들이 오로지 명의를 바로잡고, 그 지혜와 권력을 천하의 효시로 삼아서 기도한 것으로, 당시 여론은 오직 수개 웅번과 수십 유지의 명의론과 그 지혜와 권력에 제압되어 결국 이에 복종하였고, 그 후에 이르러서 점차로 그 일이 대정지선(大正至善)함을 깨닫기에 이른 것일 뿐이다.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41]라며 자신의 반론을 마치고 있다.

이후 오이는 다시 가토에 대한 재반론[42]을 시도하였고, 그에 대한 가토의 반박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둘 사이의 논쟁은 끝을 맺는다. 그러나 이상 살펴본 것처럼, 가토의 논지는 어디까지나 위에 이타가키 등에게 제기하였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마치 자신이 과거 펼쳤던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결국 오이와의 논쟁에서 스스로 밝히듯이, 민선의원의 설립은 그 시기여하에 달렸으며, 이에 대해서는 "독일인 비더만의 논의를 믿는다"[43]는 주장을 반복하는 데에 그칠 뿐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가토는 자신의 이전 논지를 답습하는 오이의 공격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시 흔히 일컬어지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 고려'에 의한 '자기부정' 내지 '변절(혹은 전향)'의 결과라고 간주해야 하는 것일까.

5. 시기상조론의 내재적 이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타가키 등의 건백자들 역시 가토와 마

41) 上揭書, p. 389.
42) 「馬城臺二郎ノ論」, 前揭『明治文化全集』第4卷 憲政篇, pp. 389-391.
43) 「加藤弘之答書」, 前揭『明治文化全集』第4卷 憲政篇, p. 389.

찬가지로 인민이 '무지불학'하다고 인식하는 데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오이 역시 일본인민의 개화가 프리드리히 때의 프러시아보다 앞서 있다고는 말하지만, 인재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민선의원 조기개설론과 시기상조론의 차이를 소위 '우민관'에서 찾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가토의 변화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역시 이론상의 주장과 현실정치에서 적용의 차이를 실감하는 데에서 나온 변화로 보아야 할까. 혹은 정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진정대의』를 저술할 당시나 이 민선의원논쟁 당시에나 그는 관료의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 민선의원 논쟁 무렵에 가토가 출판한 『국체신론(國体新論)』의 권도에 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둘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 『국체신론』이 간행된 것은 1874년 12월의 일로 즉 민선의원논쟁 이후에 출판되었지만, 사실 이 책은 민선의원논쟁 이전인 1873년 무렵에 이미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는 점[44]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토는 이 『국체신론』 집필의 단계에서 이미 자신이 본래 주장했던 '소극적 권도론'에서 한발 물러나 "개명국가에서는 군주정부가 인민을 권도하는 일이 적지만, 개화미전의 나라에서는 이 일이 대단히 긴요하다. …… 독일의 경우는 정부가 엄령을 내려 소년으로 하여금 보통의 교육을 받게 할 권리를 시행하는 법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자못 자유권을 해하는 듯하지만, 국가의 성쇠는 특히 인민의 지식에 달린 것이므로,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조금씩 독일의 법을 따르게 되었다."[45]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물론 이 문장 뒤에서 "단 권도는 결코 완전히 정부의 특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디 인민이 상호간에 행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인민개명이 증진함에 따라서 정부가 이 사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

44) 吉田曠二, 『加藤弘之の研究』, 大原新生社, 1976, p. 220 참조.
45) 加藤弘之, 『國體新論』, 植手通有遍, 前揭書, 1972, p. 393.

그렇지 않고서는, 혹은 도리어 진성한 자유권을 해할 우려가 있다"[46]고 하여 『진정대의』에서 표방했던 견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미 독일은 물론 미국도 프랑스도 교육의 일에 대해서는 자유권을 해하는 일이 될지라도 정부가 권도하는 사례가 있음을 인지한 이상 일본 역시 여기에서 물러설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즉 그는 민선의원논쟁의 현실정치론에 입각하여 인민개화를 위한 교육우선 후 의회설립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적 일관성으로부터 교육을 우선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토의 이런 태도변화에 대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역시 『진정대의』로부터 이 민선의원논쟁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천황에 대한 자신의 진강이 이루어졌다는 점, 즉 '가토 자신과 천황과의 거리'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가토는 1870년부터 1875년까지 시독(侍讀)에 임명되어 천황에게 양학(洋學)을 가르쳤다. 그는 천황에게 블룬칠리(Johann Kasper Bluntschli, 1808-1881)의 국가학이론서인 『국법범론(國法汎論)』(원저 Allgemeines Staatsrechts, 1851-1852)을 초역해서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가토가 강의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개화미전한 나라의 강력한 계몽군주, 즉 '프리드리히 대왕'을 그 모델로 하는 군주의 창출이었다. 그의 초기 저술들, 즉 『도나리구사』와 『입헌정체략』, 그리고 유신 이후의 정치적 제언서인 『진정대의』와 『국체신론』에 이르기까지 가토는 일관되게 군주에 대한 고언으로 들릴 만한 주장들, 즉 '만민의 천하'라는 이상의 실현을 위한 군주권의 제한과 인민 권리의 법적 규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상소(上疏)'했던 바 있는데, 이제 『국체신론』은 이미 천황에 대한 '상소'의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저술들과 구별된다. 『국체신론』의 '총론'에는 국학자류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 즉 천하를 천황의

46) 上揭書, p. 394.

'사유'로 삼는 왕토왕민(王土王民)적 국체론을 정면으로부터 부정하며 그것이 '야비누열'하다는 주장이 담겨있던 것을 보면, 이는 단지 상소의 차원을 넘어서 군주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이들 간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선점하고자 하는 투쟁의 양상을 띤 저술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프리드리히 대왕으로 대표되는 가토의 '계몽적 전제군주론'은 일본의 '국체'를 규정하는 데 있어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입헌의 교지도, 의원설치의 칙령도 모두 '일군의 사유'가 아닌 '만민의 천하'임을 인정하는 사상으로 무장한 군주로부터 발안됨으로써 이 '국체'가 완성되리라고 가토는 생각하였을 것이다.[47]

가토는 『국체신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치의 선악공사가 꼭 정체에 의하는 것은 아니라"[48]는 점을 영국, 프랑스 등의 실증적인 사례들로부터 강조하고 있다. 사실 가토는 이전 군주가 '진정(眞政)'을 펼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정체의 도입', 즉 입헌군주제 및 상하공치의 채택을 간언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 『국체신론』에서 나오는 정체론에 대한 유보는, 이 정체를 도입, 혹은 채택해야 할 '군주'상의 규정이 선결과제임을 가토가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자신이 이제까지 강조하던 '정체'에 의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어떤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인가의 문제, 즉 '국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아니, 이것은 물러났다기보다는 이제 가토의 시야에 본격적으로 '천황'이라는 특수한 군주의 존재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전 막번체제의 군주(쇼군)가 특정한 종교성을 띠고 있지 않으면서 가토가 은연중에 지니고 있던 유교적 관념으

47) 가토의 초기사상, 특히 洋學의 수용에 나타나는 전통적 이상주의의 영향과 변용문제에 대해서는 김도형, 「근대초기 일본 양학(洋學)수용의 유교적 맥락 - 가토 히로유키의 도나리구사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제99호(2014년 5월) 및 「加藤弘之의 洋學受容과 '天'의 變容」, 『동양사학연구』 제128집(2014년 9월) 등을 참조.

48) 加藤弘之, 『國體新論』, 植手通有遍, 前揭書, 1972, p. 407.

로서의 '천(天)'이라는 보편적 형이상학으로부터 규율 가능한 대상이었던데 비해서, 유신 이후의 군주인 천황은 그 특수한 종교성(神道)으로부터 보편적인 '천'의 규율과 충돌하게 되는 사정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천황에 대한 복종심을 넘어 '천황의 미고코로(御心)를 마음으로 삼'[49]는 절대의존적인 삶의 방식을 위로부터 주입하려고 하는[50] 국체는, 적어도 이 시기의 가토가 보기에 '누열(陋劣)'[51]한 것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 시기에 보이는 정체론에서 국체론으로의 변화는, 본래 가토가 지니고 있던 보편적 형이상학으로써 유신 이후의 국체론을 규정해 보고자 하는 시도임과 동시에, '특수'한 군주인 천황을 재규정하려는 시도로부터 촉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부터 저 국학자들의 국체론에 대한 격렬한 반발과 함께, 민선의원 즉시개설론에 대한 반박으로서의 시기상조론이라는 두 가지 언뜻 모순되는 것으로도 보이는 태도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토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입헌과 의회설립의 '시처(時處)'를 판단하고 '조칙'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주(=천황)의 몫임에도, 당시 일본의 인민은 물론 천황 또한 이를 판단할 만한 역량을 갖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민선의원설립에 필요한 조건은 단지 '인민의 개화'만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고 있던 교육, 즉 '천황의 계몽'이 전제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애초에 가토의 저술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천황'과 그 주변 관료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서구의 정치원리를 를 통해 구현할 '진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당시 천황 주변을 둘러싼 국학자들의 모고주의(慕古主義)가 어째서 새로운 시대의 '진정'이 될 수

49) 上揭書, p. 384.

50) 前田勉, 「東アジア近代と國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51호, 2006. 12, p. 15.

51) 加藤弘之, 『國體新論』, 植手通有遍, 前揭書, 1972, p. 385.

없는지를 강력하게 설파하는 것이었다.[52] 그런 의미에서 가토가 '시기상조'의 이유로 든 '개화미전'은, 단지 인민만을 염두에 두고서 나온 발상은 아니었다고 보아도 무리한 추정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가토의 논리 안에서는, 비록 그가 천부인권을 주장하고 그에 입각한 정부형태를 구상했을지언정, 심지어는 한때 만민동권적 국가의 가능성마저 검토해본 일이 있었을지언정,[53]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명한 군주'의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황이 그때까지 알아왔던 국체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국체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메이지천황에게 납득시켜 그 새로운 국체 안에서 '천황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정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가토에게 있어 민선의원설립의 시기가 무르익는 것은, 인민뿐만이 아닌 천황이 '계몽'된 이후의 일이었을 것이다.

6. 맺음말

이 민선의원논쟁에 대해 가토는 후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 메이지 7년 겨울 무렵에, 저 정한론이 일어나서 사이고(西鄕) 이하 참의들이 사직한 이후, 소에지마, 고토 등이 민선의원개설을 건의하고, 세상 사람들도 또한 크게 여기에 贊助하는 형세가 되었는데, 나만이 홀로 민선의원의 개설을 尙早라 하며 도리어 당시에는 유해무익하다고 확신하고 그러한 旨意를 논하여 소에지마·고토 이하에게 보냈는데, 소에지마 등은 다시 나에게 답변을 보내어 내 논지를 반박하였다.

52) 加藤弘之, 『眞政大意』, 植手通有遍, 前揭書, 1972, pp. 367-370.

53) 加藤弘之의 『立憲政體略』에는 '만민동권'적 정체를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듯한 발상이 잠시 등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주류가 되지는 못한다. 이 시기까지의 그는 어디까지나 고대 중국의 '이상적 봉건주의'에 입각하여 서구의 정체를 판단하는 '士'적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나의 논지는 원래 내가 확신한 바에서 나온 것으로, 조금도 정부를 위해서 변호한 것이 아니었는데, 표면상 자연스레 정부의 변호라고 邪推하는 것도 가능하였기에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실로 왕성하여, 나를 흡사 정부의 앞잡이인 듯이 말하고, 심한 경우에는 기도 참의[54]의 의뢰를 받아 논한 것이라고 평하는 자도 있었다. 이것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한 일로, 내가 '쇼소(しょうそう/尙早)'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이 때였다.[55]

가토는 이 민선의원논쟁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듯, 가령 '기도의 부탁을 받아 그런 주장을 펼쳤다'던가, '정부의 앞잡이'라는 식의 원색적인 공격이 쏟아졌던 일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과거 민권론적 언설들이 군주 내지 정부 관료들을 그 대상으로 상정하면서 전개했던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조론'이 자신이 본래 지녔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말이 꼭 거짓으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가토는 상조론에서 끊임없이 '개화미전의 인민'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 민선의원을 설립하고 '조칙'을 내릴 천황 내지 정부고관들 역시 개화미전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가토의 일견 선구적인 의회론, 입헌정체론이 사실 정부 관료와 천황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인민의 입장으로부터 주장하는 '민선의원설립'은 철저히 순서가 뒤바뀐, 얼토당토하지 않은 공론(空論)으로 보였을 것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의 가토는 서구의 정체론을 보다 특수적인 일본의 국체와 조화시키는 일, 혹은 천황에게 '주입'함으로써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국체를 만들어 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정한논쟁에서 패퇴한 '구 참의'들의 정략적인 민선의원개설론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으리라.

이렇게 본다면, 민선의원논쟁에서 가토가 이전까지 자신의 논지

54) 당시 참의였던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를 가리킨다.
55) 加藤弘之, 『國體新論』, 植手通有遍, 前揭書, 1972, p. 486.

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세간에서 일컬어졌듯이 어떠한 '외압'으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가토의 '토로'에는 일리가 있다. 그는 '만민의 천하'로부터 이루어지는 국체를 주장했고, 그것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민선의원이나 '입헌의 정체'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전제조건은 어디까지나 천황이 스스로 '프리드리히의 공심'을 갖춘 계몽군주가 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 논쟁은 가토가 당시 자신의 사상 안에 내재하던 모순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모순은 적어도 기존의 정치사적 해석에서 흔히 일컬어지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자기부정이 아닌, 과거의 보편적 원리(天理, 政體論등과 같은)를 현재의 특수적 상황(天皇, 國体論)에 대입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모순이었다. 위의 오이와의 논쟁에서 가토가 내비친 '나는 독일인 비더만의 논의를 믿는다'는 언술은, 자신의 모순을 깨달은 순간 스스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더 큰 권위에 기대고자 하는 심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방어적 태도로도 읽히는데, 이것은 자신이 '보편'이라고 믿고 준거로 삼았던 사상(그것은 유럽적인 것임과 동시에 전통적 보편성에 합치하는 것이기도 했다)이 특수일본적 '천황'이라는 상황적 계기를 본격적으로 인지하면서 드러난 모순에 직면한 가토가 취할 수 있는 궁여지책이었을 것이다. 이제 실제의 정쟁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처한 모순적 상황에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 가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적 상황을 부정하던가, 새로운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모순은 단지 진보/보수와 같은 정치적 입장차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시대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윽고 가토는, 그 모순을 하나의 통일적 원리로 설명해 줄 새로운 보편원리를 찾아내는 데 자신의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植手通有遍,『日本の名著34 西周・加藤弘之』, 中央公論社, 1972.
吉野作造遍,『民選議員集説』『明治文化全集』第4巻 憲政篇, 日本評論社, 1927.
山室信一・中野目徹校注,『明六雑誌』(上), 岩波書店, 1999.

2. 논문

김도형,「근대초기 일본 양학(洋学)수용의 유교적 맥락 – 가토 히로유키의 도나리구사를 중심으로」, 韓国日本学会,『日本学報』 제99호, 2014, pp. 363–380.
_____,「加藤弘之의 洋学受容과 '天'의 変容」, 東洋史学会,『東洋史学研究』 제128집, 2014, pp. 349–384.
前田勉,「東アジア近代と国学」,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 제51호, 2006, pp. 1–17.
戸田文明,「加藤弘之の転向」,『四天王寺国際仏教大学紀要』第44号, 2007, pp. 15–28.
安世舟,「明治初期におけるドイツ国家思想の受容に関する一考察ーブルンチュリと加藤弘之を中心としてー」, 日本政治学会編『日本における西欧政治思想』, 岩波書店, 1975, pp. 113–156.
渡辺和靖,「加藤弘之の所謂「転向」ーその思想史的位置付け」 東北大学校日本思想史学研究室,『日本思想史研究』第5号, 1971, pp. 18–31.

3. 단행본

방광석,『근대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혜안, 2008.
大久保利謙,『大久保利謙歴史著作集』第8巻, 吉川弘文館, 1989.
河野有理,『明六雑誌の政治思想』, 東京大学出版会, 2011.
田畑忍,『加藤弘之』, 吉川弘文館, 1959.
鳥海靖,『日本近代史講義』, 東京大学出版会, 1988.
松本三之介,『近代日本の政治と人間』, 創文社, 1966.
吉田曠二,『加藤弘之の研究』, 大原新生社, 1976.
米原謙,『日本近代思想と中江兆民』, 新評論, 2002.

[日文抄錄]

明治7(1874)年 加藤弘之の民選議員設立時機尚早論に関する一考察

金 度 亨

明治7(1874)年、征韓論で敗退した旧参議から「民選議員設立建白書」が提出され、民選議員設立論争が重要な政治課題として浮上した。以前までは先駆的に立憲制度や上下共治の重要性を説いていた加藤弘之は、これに対して所謂「時期尚早論」と呼ばれる立場を新聞紙上に公表し、大きな議論を巻き起こした。今までの研究ではこのような加藤の立場表明を「変節」や「転向」などと呼びながら、その理由を政治的状況や個人の官僚的性向、あるいはその「愚民観」から探ろうとする傾向が強かった。しかし、このような研究はイデオロギー的影響を強く受けた事後的な観点からなされた感が少なくない。本研究では、加藤の以前の著述からの連続性を考慮しながら「時期尚早論」の内在的論理を究明し、それが加藤が当時持っていた現実認識と問題意識、特に以前から続いていた君主観(天皇観)から君主(天皇)の啓蒙を優先される認識と深い関連があることを確認した。

キーワード：加藤弘之、民選議員設立論争、時期尚早論、
愚民観、転向, 真政大意、国体新論、啓蒙主義

김도형
소속: 영남대학교 BK21+ 글로컬동아시아문화콘텐츠사업단 연구교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래미안서초유니빌 1708호
전화번호: 010-2012-9317
전자우편: artenet@daum.net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5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0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